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시행지침

••• 목 차 •••

I. 총 칙	4
II. 지원요건	7
1. 실시기업 지원요건	7
2. 신중년취업자 지원요건	9
3. 지원요건 적격심사	10
III. 지원 절차	11
1. 모집 및 선발	12
2. 신중년취업지원협약(시·군-실시기업) 체결	14
3. 신중년채용약정(실시기업-신중년취업자) 체결 및 관리	15
IV. 지원내용	21
1. 지원수준 및 지급방식	21
2.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22
V. 지원관리	24
1. 도(시·군) 지원금 관리	24
2. 사후관리	26
VI. 시행일	26

※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분 (페이지)	현행	개정	비고		
지원요건 적격심사 (p.10)	3-1. (적격심사) 시·군은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기업과 신중년취업자의 <u>자격에</u> 관하여 이견이 있을 시 ... 결정할 수 있다.	3-1. (적격심사) 시·군은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기업과 신중년취업자의 <u>자격 및 지원적격여부</u>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시 ... 결정할 수 있다.			
약정해지의 통보 및 결원보충 (p.20)	<p>② 신중년 채용(대체충원)에 따른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대체충원 결정 시점부터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u>종료 시점까지</u>의 기간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p> <p>※ 사례: 신중년취업자가 기업에 책임없는 사유로 중도퇴사해 실시기업이 ... 지급될 수 있다.</p> <p>③ 실시기업은 대체충원 결정 시점으로부터 ... 취소한다.</p>	<p>② 신중년 채용(대체충원)에 따른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대체충원 결정 시점부터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u>전체 지원기간 중 남은 기간 범위</u> 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p> <p>※ 사례: 신중년취업자(2024.1.1.채용)가 기업에 책임없는 사유로 중도퇴사해 실시기업이 ... 지급될 수 있다.</p> <p>③ 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자의 <u>중도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대체충원 요청을</u> 해야하고, 대체충원 결정 시점으로부터 ... 취소한다.</p>			
신중년 취업장려금 (p.22)	○ (지급방식) 취업장려금은 신중년채용 약정에 따른 근로시작일부터 기산한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p>○ (지급방식) 취업장려금은 신중년채용 약정에 따른 근로시작일부터 기산한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p> <p>※ 단, 대체충원자는 취업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참여기업 심사지표 (p.28)	-	<table border="1"> <tr> <td>중도탈락률 50% 이상</td> <td>10</td> </tr> </table>	중도탈락률 50% 이상	10	신설
중도탈락률 50% 이상	10				
서식 (p.48)	-	중도탈락자에 대한 대체인력 명단통보서	추가		

I. 총칙

1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이하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이라 함)은 신중년근로자 채용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함)과 신중년취업자에 대하여 각각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고용촉진사업으로,
 - ‘실시기업’에는 인력수급을 돕는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신중년취업자’에게는 일자리 마련을 도와 생계유지에 보탬이 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지침은 신중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의 지원요건, 지원절차, 지원내용 등 사업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이 시·군 현장에서 효과적이고, 통일성 있게 수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고령자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 고용상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시행령 제5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14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3 적용범위

- 이 지침은 2025년에 실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적용된다.

4

용어정의

- 4-1.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이란 실시기업과 신중년취업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촉진사업으로, 실시기업에는 신중년 채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중년취업자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4-2. “실시기업”이란 구직 중인 신중년 미취업자를 신중년취업자로 선발하여 연수 및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 4-3. “신중년취업자”이란 실시기업과 「신중년채용약정」을 체결하여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4-4. “사업주”란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단위 사업주를 말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다.
- 4-5. “사업장”이란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을 말하며, 동일한 사업주 하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존재할 수 있다.
- 4-6. “상시근로자”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로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수를 의미한다.
- 4-7.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란 『고용보험법』 제 2항 제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나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 수에서 제외한다)를 의미한다.
- 4-8. “1주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1주 근로시간 40시간, 1일 근로시간 8시간) 내에서 실시기업과 신중년취업자 간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사유 발생일 직전 4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으로 산정한다.

5 운영주체별 역할

○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 총괄·조정
- 시·군과 실시기업에 대한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미취업 신중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신중년취업 희망자 및 신중년취업자 채용 희망기업 등에 대한 상담

○ 시·군

- 신중년 취업 참여업체 수요조사·발굴, 신중년취업자 모집
- 신중년취업 희망자와 기업의 신청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 신중년취업 희망자와 실시기업 간 「신중년채용약정」 체결 지원 및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지도·관리
- 신중년취업 실시기업 및 신중년취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반환
- 실시기업에 신중년취업자의 정규직 채용 권유·안내 및 정규직 채용 후 지원금 신청 지원
- 실시기업 및 신중년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3년) 실시

○ 실시기업

- 도 및 시·군의 알선을 받아 신중년취업자를 채용 및 관리
- 실시기업과 신중년취업자 간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신중년채용약정」 체결
- 시·군에 지원금 신청 및 임금 선지급
- 수습 중에 있는 신중년취업자의 정규직 전환 노력

Ⅱ. 지원요건

1 실시기업 지원요건

1-1. 대상기업

- (신규)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으로서 신중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기업
 - 신중년(만 40세 이상 69세 이하)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할 것 또는 신중년을 채용한 기업으로서 해당 신중년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것
 - 신중년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일 것
 - 신중년채용약정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기존) 전년도 참여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 당시의 상시근로자수 이상을 고용할 것(다른 조건은 위와 동일)
 - ※ 다만 지원 이후,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부득이하게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이때, 해당 기업은 고용유지 노력 및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비영리 기관) 비영리법인·단체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한다.

1-2. (제외대상)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소비 향락업 등 업종

-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하는 업종*
 -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틱업, 무도장 운영업 등
- ②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조,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2조에 해당하는 업종*
 -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③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4)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외기간)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신중년은 지원 불가

5)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6)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7)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속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8)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9)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1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56조 제 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11) 신중년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12)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신중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13)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14) 신중년의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15)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16) 전년도 중도탈락률이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하였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 17)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 18) 기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2 신중년취업자 지원요건

2-1. 지원 대상

- ① 현재 만 40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
- ② 사업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또는 채용예정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자

〈다음 각호의 사람은 취업 중인 자로 본다〉

- 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나.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 다.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③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자

2-2.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중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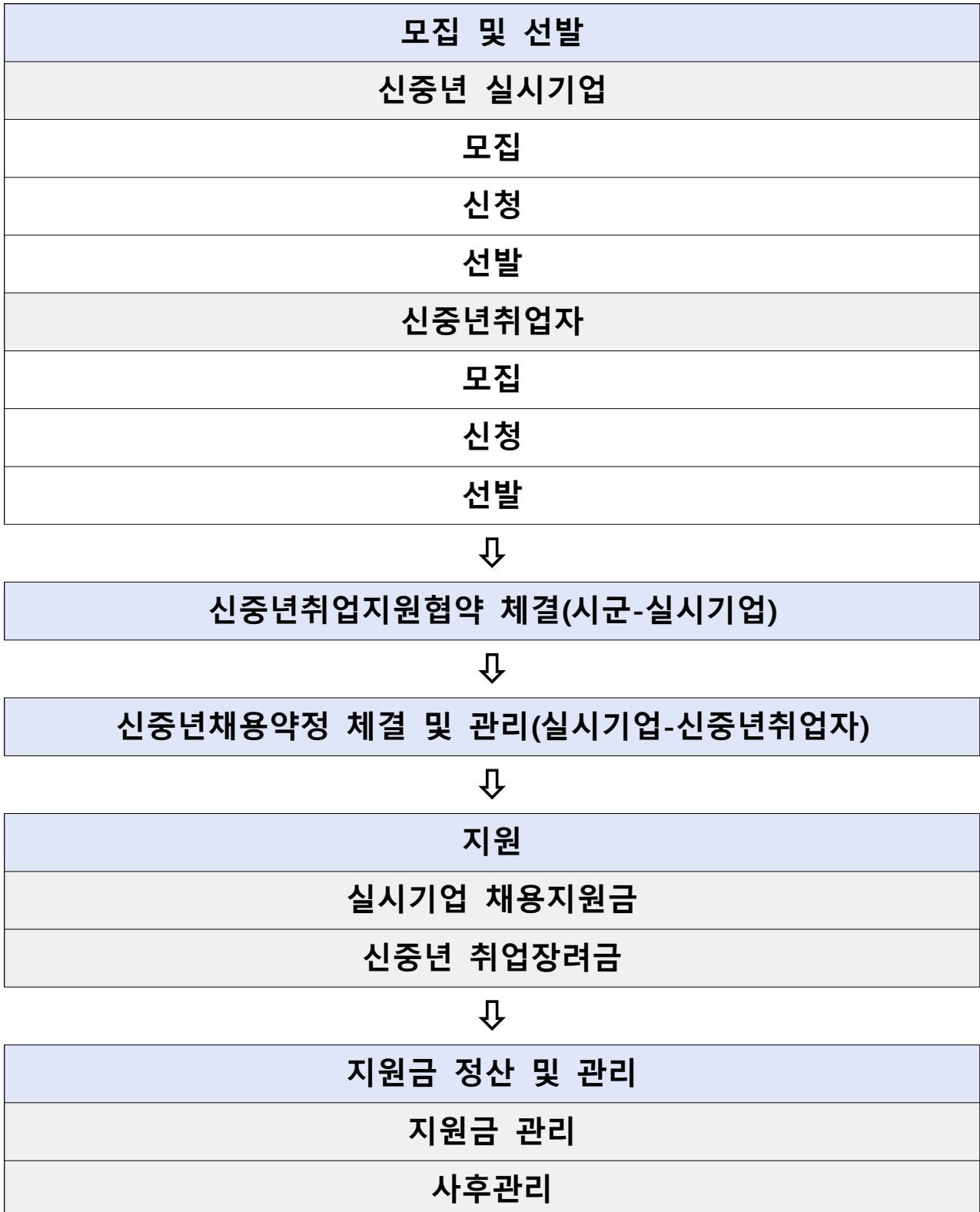
-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③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본인이 원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다만 신중년이 원하여 해지된 경우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참여할 수 있다)
- ④ 신중년 취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신중년취업채용 예정기업에서 근무한 자
-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중년취업자로 채용되었던 자
- ⑥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
- ⑦ 기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지원요건 적격심사

3-1. (적격심사) 시·군은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기업과 신중년취업자의 자격 및 지원적격여부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시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실시기업’과 ‘신중년취업자’를 결정할 수 있다.

3-2. (심사위원회의 구성) ‘시·군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심사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군별 상황에 맞게 자체 운영한다.

Ⅲ. 지원절차



1 모집 및 선발

1-1. 신중년 실시기업

○ 모집

- (모집공고) 시·군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의 내용과 실시기업 자격요건, 지원절차, 지원내용을 공고해 실시기업을 모집하여야 한다.
- (사전안내) 시·군은 실시기업에 대하여 부정참여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사전 안내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신청

- 신중년 취업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참여기업 모집 기간 내에 『신중년취업채용신청서(서식1)』와 『신중년취업운영계획서(서식2)』를 작성하여 기업소재지 시·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때, 시·군은 제출받은 서류 외에 신청기업 적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 '고용보험가입자목록',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등

○ 선발

- (자격심사) 시·군은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을 심사하며, 채용예정규모의 2배수 범위에서 실시기업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단, 추가로 실시기업의 모집이 필요한 경우 채용예정규모의 2배수를 초과하여 실시기업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 시·군은 '실시기업 자격 심사'시 참여기업이 제출한 신중년 채용예정규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시·군은 모집기간 내 신청 규모와 시·군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각 기업에 예정인원을 할당하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우선지급) 시·군은 자격이 인정된 기업 중 할당된 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신중년취업자와 '신중년채용약정'을 체결한 순서를 기준으로 지원금 우선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단, 예산소진으로 지원 종료 可).
- (협약체결) 시·군은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실시기업에 대하여 '신중년취업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대상확정) 시·군은 심사기준(첨부1)을 통해 자체 검증절차를 거쳐 실시기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때, 실시기업의 자격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다.

1-2. 신중년취업자

○ 모집

- 시·군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의 내용과 신중년 지원요건, 지원절차, 지원내용을 공고해 신중년 참여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 신청

-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신중년 모집 기간 내에 『신중년 취업지원신청서(서식3)』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동의자에 한함, 서식4)』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때, 시·군은 제출받은 서류 외에 신청자 적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선발

① 시·군 선발

- (취업상담) 시·군은 신중년 취업신청자에 대하여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 (채용알선) 시·군은 상담 결과에 따라 신중년취업자 및 구인기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신중년을 선발하고, 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업 직접선발

- 시·군의 알선으로 신중년취업자를 선발하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체 모집계획에 의거하여 일간지·인터넷 등에 신중년취업자 모집을 공고하여 직접 선발할 수 있다.
- 실시기업이 신중년취업자를 직접 선발하기 위해서는 시·군에 신중년취업채용신청서, 자체모집 경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자의 채용이 확정되는 즉시 『신중년취업 선발자 명단 통보서(서식5)』를 기업 소재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신중년취업지원협약 체결(시·군-실시기업)

2-1. 신중년취업지원협약의 체결

- (협약체결) 시·군은 『신중년채용약정서(서식6)』와 『신중년취업운영계획서(서식2)』 등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당해 실시기업과 ‘신중년취업지원협약(서식8)’을 체결하여야 한다.
- (협약내용) ‘신중년취업지원협약’에는 실시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시 제재사항, 지도·점검상 조치 및 『신중년채용약정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신중년취업지원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 경우, 향후 있을 추가 신중년 취업채용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업지원협약을 체결함 없이 『신중년채용약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조건) 시·군은 협약체결 시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다만, 약정 기간 내에 서류 보완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건을 근거로 해당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2-2. 신중년취업지원협약의 해지

- (해지) 시·군은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신중년취업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중년 취업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중년취업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해지권고) 도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실시기업이 본 지침 및 ‘신중년취업지원협약’에 위반되는 사정을 발견한 경우, 시·군에 대하여 ‘신중년취업지원협약’의 해지를 권고할 수 있다.

3

신중년채용약정 체결·관리 [실시기업신중년취업자]

3-1. 신중년채용약정의 체결

- **(약정체결)** 실시기업과 신중년취업자는 채용결정 후 『표준신중년채용약정서(서식6)』를 준거로 당사자 간 협의하여 신중년채용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약정통지)** 실시기업은 신중년채용약정 체결 후 해당 사실을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 **(채용한도)** 실시기업은 당해연도 ‘신중년취업지원협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기업 상시근로자 수의 40%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에서 신중년채용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실시기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본사와 지사 등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 채용한도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한다.
- **(상시근로자수 유지)** 실시기업은 지원금 지원 기간에 ‘협약체결 직전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또는 ‘협약 체결 당시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여야 한다(단, 상시근로자 수에 신중년 취업 참여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 **(약정효력)** 신중년채용약정(근로계약)은 노동관계법령 및 당해 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동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한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과 신중년채용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2. 신중년채용약정의 관리

1) 신중년취업자의 법적지위 및 보험적용

- **(법적지위)** 신중년취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 **(보험적용)** 실시기업은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중년취업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 (업무상 재해)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신중년채용약정 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 실시기업의 책임에 의해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시·군은 실시기업의 과실 및 귀책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 동안 실시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다만, 신중년취업자가 실시기업의 책임 없이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간을 신중년취업자에 대한 채용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해당 요양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시·군은 실시기업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2) 신중년취업자의 급여 및 기타 근로조건

① 급여수준 및 지급방법

- (급여수준) 신중년취업자의 급여는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되,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지급방법:선지급) 실시기업은 신중년 취업지원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신중년채용약정에서 정한 날에 신중년취업자에 대한 급여를 계좌송금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타 근로조건

- (근로시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따른 근로시간은 신중년채용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 형태로 정할 것 권장한다.
 - 다만, 실시기업과 신중년취업자는 기업의 고용여건 및 신중년의 사정을 고려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최소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가산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신중년취업자의 교육, 배치 및 운영

- (배치 및 근무상황 관리) 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자의 전공,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부서에 배치하여야 하고, 신중년취업자의 『출근부(서식9)』를 비치해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전담자 및 멘토 지정) 실시기업은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할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신중년취업자의 업무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도·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할 멘토를 지정하여야 한다.

4)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 노력) 도(시·군) 및 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자가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정규직 전환 통보)
 - (채용여부 통보) 실시기업은 원칙적으로 신중년취업 수습기간 만료 전에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여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채용명단 통보)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정규직 채용자 명단(서식10)』을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자의 정규직 전환 시 표준근로계약서(서식7)를 준거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정규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의미한다.
(단,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더라도 2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이라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본다).

- (보완기간) 시·군은 실시기업이 정규직 채용 후 지원기간 내에 협약체결 직전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또는 협약체결 당시 상시근로자 수를 미달하게 된 사정이 생긴 경우, 해당 미달에 대한 기업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시·군은 보완기간 내에 근로자 충원기간 설정, 충원시 지원금 소급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중년취업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3-3 신중년채용약정의 해지

1) 신중년 실시기업

- (약정해지의 제한) 실시기업이 신중년채용약정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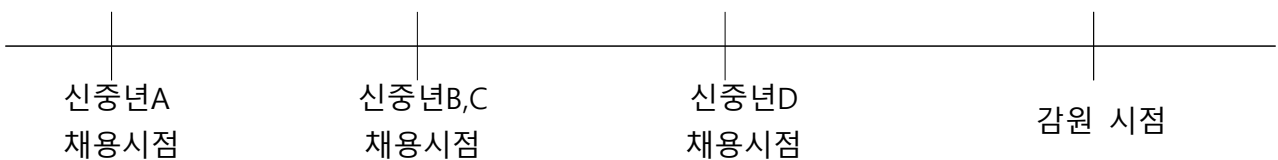
*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 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정당한 사유'라 함은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중년채용약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채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 중단하며, 실시기업은 약정 해지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인위적 감원의 제한)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 기간 내에 당해 사업장의 신중년 아닌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정리하고, 고용조정 등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 감원발생 시점부터 감원 인원수와 동일한 인원수의 '신중년취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 중단한다.
- 인위적 감원에 대한 제재로서 지급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감원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채용된 신중년취업자의 채용에 대한 지원금으로 한다(즉, 감원 시점에 인접하여 채용된 순서대로, 해당 신중년 취업자 채용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 중단한다).
- 만약 신중년채용약정을 동시에 체결한 것과 같이 감원 직전 채용된 신중년취업자가 2인 이상인 경우(동시 채용), 대상이 되는 신중년 중 임금이 높은 신중년취업자의 채용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 ※ 사례 : 실시기업이 2명의 근로자를 인위적 감원하여, 실시기업에 대하여 2명분의 채용 지원금을 중단하고자 할 때, 대상이 되는 신중년취업자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 ① 감원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채용된 신중년 D를 고용하여 받게 된 지원금을 지급 중단한다.
 - ② 감원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으로 인접하여 채용된 B, C 중 임금이 높은 신중년취업자(B)를 고용하여 받게 된 지원금을 지급 중단한다.
-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해당 실시기업은 감원 시점부터 2년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약정해지의 통보 및 결원보충)

- (해지통보) 실시기업은 약정을 해지한 경우,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금의 지급은 신중년취업자의 실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결원보충) 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자가 당해 기업에 '책임 없는 사유'로 중도에 퇴사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시·군에 대체충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다만, 시·군은 중도 퇴사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내부 심사를 통해 결원보충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 ① '책임 없는 사유'와 관련해, 당해 기업에 신중년 퇴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는 신중년채용약정에서 정한 근무형태, 근무내용 및 신중년취업자의 의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② 신중년 채용(대체충원)에 따른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대체충원 결정 시점부터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전체 지원기간 중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 사례: 신중년취업자(2024.1.1.채용)가 기업에 책임없는 사유로 중도퇴사해 실시기업이 대체충원을 요청한 경우(2024.05.08.), 사업종료 시점(2024.12.31.)까지 '7개월 23일'이 남게 되므로 당사자는 합의로서 최대 7개월까지 약정으로 정할 수 있고 실시기업에 대한 채용지원금은 최대 7개월까지 지급될 수 있다.

- ③ 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자의 중도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대체충원 요청을 해야하고, 대체충원 결정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원보충을 하여야 한다. 기간 내 결원보충을 하지 못한 경우 대체충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중년취업자

- (신중년취업자의 약정해지) 신중년취업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취업포기하는 등 원하여 약정이 해지된 경우, 실시기업에 대한 채용지원금 및 신중년에 대한 채용장려금을 미지급한다.
- (재참여 요건) 신중년취업자가 중도에 약정을 해지한 경우, 그때까지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1회에 한하여 다시 참여할 수 있다.
 - 다만, 기업의 도산, 사업의 폐지, 정리해고 등 신중년취업자 본인이 원하지 않은 사유로 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신중년 근무기간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다시 참여할 수 있다.

IV. 지원내용

1 지원수준 및 지급방식

1-1. 실시기업 채용지원금

1) (수습기간 채용지원금) 실시기업에 대한 수습기간 채용지원금은 새로 채용한 신중년취업자 1인당 월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기간) 수습기간 채용지원금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서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한 수습기간 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한다.
- (차등지급) 신중년 채용지원금은 '신중년채용약정'에서 정한 수습기간 동안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한다(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70만원).

※ 사례1 : 신중년채용약정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 70만원(신중년취업자 1인당 지원금) × 3/8(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40시간) = 262,500원

※ 사례2 : 신중년채용약정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 70만원(신중년취업자 1인당 지원금) × 6/8(1주 소정근로시간:30시간/40시간) = 525,000원

2) (정규직 전환지원금) 실시기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신중년 정규직 전환자 1인당 월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기간) 정규직 전환 이후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간 지원할 수 있다.
- (차등지급)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신중년취업약정'에서 정하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한다(지급방식은 수습기간 채용지원금과 같다).

1-2. 신중년 취업장려금

- (지원수준) 신중년취업자에 대한 취업장려금은 장려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실시기업에 장기근속한 자에 대하여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 (지급방식) 취업장려금은 신중년채용약정에 따른 근로시작일부터 기산한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단, 대체총원자는 취업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6개월 계속 근로시) 취업장려금 50만원 지급
- (12개월 계속 근로시) 취업장려금 50만원 추가 지급
- (24개월 계속 근로시) 취업장려금 100만원 추가 지급

※ 사례 : ① 신중년채용약정에 따른 근로시작일로부터 6개월 계속 근로시 최초 취업장려금 50만원을 지급받고, ② 이후 6개월을 추가 근로할 경우(근로시작일부터 기산시 12개월 계속 근로) 취업장려금 50만원을 추가로 지급, ③ 이후 12개월을 추가근로할 경우(근로시작일부터 기산시 24개월 계속 근로) 취업장려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20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2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2-1. '실시기업 채용지원금' 지급 절차

- (신청절차) 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수습근무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익월 5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서(서식12)』를 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임금 통장, 출근부, 임금대장 사본, 근무자의 4대보험 가입 확인서(최초 신청시 제출, 이후 변경 있을시 제출)

- (지급시기 및 방법) 시·군은 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신중년취업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매월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실시기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단, 시·군과 기업의 합의에 따라 지원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지급제한)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신중년취업 수습기간 만료 전에 신중년채용약정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 기준 추후 2년 동안 신중년취업 신규채용 지원이 금지되며,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 등 유사사업 시행기관에 통보한다.

2-2. '실시기업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 절차

- (지원조건) 실시기업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무 수습기간의 만료일 전 15일 이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 (신청절차) 실시기업은 정규직 전환 후 익월 5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신청서(서식12)』를 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임금 통장, 출근부, 임금대장 사본, 근무자의 4대보험 가입 확인서(최초 신청시 제출, 이후 변경 있을시 제출)

- (지급시기 및 방법) 시·군은 지원금신청서에 따른 실시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상시고용인원 유지, 신중년취업자의 근무상황, 급여수준 등을 확인하여 지원서를 제출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단, 시·군과 기업의 합의에 따라 지원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3. '신중년 취업장려금' 지급절차

-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장려금을 받으려는 자는 『장려금 지급신청서(서식14)』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중년 취업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유발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시·군에 취업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V. 지원 관리

1 도시·군 지원금 관리

1-1. (시·군에 대한 도 지원금 교부) 시·군에 대한 신중년 취업지원금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교부된다.

1-2. 지원금 관리

- (적용 법률)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을 위하여 시·군에 대하여 지급되는 도 지원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관계서류의 보존) 시·군은 지원금 지급대장,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계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3. 부정지출·수급 방지

- 시·군은 『전북특별자치도(시·군) 보조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실시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 제40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41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신중년 취업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수급한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그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2년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의 참여를 금지하며, 2년이 경과 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사업 참여를 금지한다.
- 부정수급에 따른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 금지기간 중 채용된 신중년취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지급된 지원금은 반납·환수하여야 한다.

1-4. 지원금의 반납·상계

- (시·군의 반납의무) 시·군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만약 시·군이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시·군은 사업 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신중년 취업지원협약’이 해지된 경우, 중단 및 해지 시점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의 반납의무) 실시기업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중년취업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부당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1-5. 지원금 정산

- (사업비 정산 보고) 시·군은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군은 사업기간 종료 전 부득이한 사유로 『신중년취업지원협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원금 확인) 시·군은 관련 서류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실시기업에 대해 지급한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비 반납 및 추가 지급) 시·군은 정산결과를 바탕으로 신중년 지원사업 지원금이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급분을 반납하여야 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2 사후관리

2-1. 서류관리 및 보존

- (서류관리) 시·군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신중년취업자의 인적사항, 실시기업 현황, 중도포기 내역, 정규직 전환 내역, 신중년 취업지원금 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조사·관리) 시·군은 실시기업과 신중년취업자 간 건전한 고용 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업실시 후 3년 동안 고용유지율에 대한 자료를 조사·관리하여야 한다.
- (자료 조사) 전북특별자치도는 시·군에 대하여 사업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시·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2. 지도·점검

- (시·군의 지도점검) 시·군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년 취업내용, 근무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의 협조의무) 실시기업은 시·군에서 실시하는 지도·점검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시·군은 실시기업이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중년취업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참고자료)에 따라 주의,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신중년취업자 신규채용 지원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VI. 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목록]

[첨부1]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심사지표	28
[첨부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29

[서식 목록]

[서식 1] 신중년취업 채용신청서(기업용)	30
[서식 2] 신중년취업운영계획서(기업용)	32
[서식 3] 신중년취업지원신청서(참여자용)	33
[서식 4]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34
[서식 5] 신중년취업 선발자 명단통보서(기업용)	36
[서식 6] 신중년채용약정서	37
[서식 7] 표준근로계약서	38
[서식 8] 신중년취업지원협약서	39
[서식 9] 출근카드	43
[서식 10] 정규직명단 통보서	44
[서식 11] 신중년취업자 지원금신청서	45
[서식 12] 정규직전환 지원금신청서	46
[서식 13] 중도탈락자 명단통보서	47
[서식 14] 중도탈락자에 대한 대체인력 명단통보서	48
[서식 15] 취업장려금 지급신청서	49
[서식 16] 설문조사서	50
[서식 17] 신중년취업 실시기업 만족도 조사	52

[첨부 1]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심사지표

기 준		배점	비고	
기업규모 (20)	100인 이상	20		
	50인 이상 ~ 100인 미만	15		
	10인 이상 ~ 49인 미만	10		
	10인 미만	5		
월 급여액 (40)	260만원 초과	40		
	최저임금 초과 ~ 260만원 이하	35		
	최저임금	25		
중도탈락률 (30)	2024년 기 준	중도탈락률 10% 이하	30	* 신규 참여기업 11% 이상 ~ 20% 미만적용 (25점)
		중도탈락률 11% 이상 ~ 20% 미만	25	
		중도탈락률 20% 이상 ~ 30% 미만	20	* 30% 이상 ~ 50%미만이나 전년도 채용인원 5명 이하 (20점)
		중도탈락률 30% 이상 ~ 50% 미만	15	
		중도탈락률 50% 이상	10	
사업년도 신규채용 계획인원 (10)	20% 이상 ~ 30% 미만	10		
	10% 이상 ~ 20% 미만	8		
	10% 미만	5		
가점	최근 2년간 고용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기업	5		
	도·시·군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3		
	전년도 고용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교육생 채용기업	2		
	가족친화 인증기업	2		
	일자리 으뜸기업	2		
	시·군 자율 가점	1		

* 탈락 : 평가 점수 60점 미만

[첨부 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실시기업의 위반행위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인위적 감원	○ 지원 기간 중 기존 직원을 부당하게 감원	○ 감원 인원수만큼 지원중단 ○ 2년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 지원 종료 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직원을 부당하게 감원	○ 3년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부정수급	○ 기존직원 신중년취업수습 채용 ○ 실무수습자,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 부정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 2년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기 타	○ 지침, 지원협약 위반 ○ 기타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 1차레 위반 : 주의 및 시정지시 ○ 2차레 위반 : 경고 및 시정지시 ○ 3차레 위반 :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 시정지시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요구하며, 이를 불이행시 경고조치. 이후 10일 이상 기간 부여하여 재요구하며, 이를 불이행시 지원중단 조치

※ 3차레 위반으로 인한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시 2년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고용노동부 등 유사사업 시행기관에 통보

[서식1]

신증년취업채용신청서(기업용)

※ 접수번호 :

업 체 현 황	사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번호		
	주소	□□□-□□□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피보험자수	본사	명(채용 후 명)	지사(지점)	명(채용 후 명)	
	주요 사업내용	1. 2.		설립시기		
	업종					
	고용노동부 등 타기관 인턴채용 현황	()명, 해당없음()				
	채용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 -	팩스	-	-
		이메일 주소	@			
		휴대전화	- -			

회사 연혁	
----------	--

회사 비전 등 소개	
---------------------	--

	구분	분야	인원		학력(전공)	상세직무	정규직전환계획인원	
			청년	신중년			청년	신중년
모집사항	모집직종 1)							
	모집직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1. 2. 3.						
	근로조건	· 급여 : 월 _____ 만원(도, 시·군 지원금 포함) · 근무시간 : · 휴일 : · 기타 복지사항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취업 목적의 정보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

본 사업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소비 향락업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갬블링 및 베테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청소년 유해업소 등)	해당 □ 해당없음 □
② 국가 및 공공기관 등	해당 □ 해당없음 □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해당 □ 해당없음 □
④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해당 □ 해당없음 □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해당 □ 해당없음 □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56조에 의해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해당 □ 해당없음 □
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해당 □ 해당없음 □
⑧ 신중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해당 □ 해당없음 □
⑨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신중년 취업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해당 □ 해당없음 □
⑩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해당 □ 해당없음 □
⑪ 신중년의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해당 □ 해당없음 □
⑫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해당 □ 해당없음 □
⑬ 전년도 중도탈락률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해당 □ 해당없음 □
⑭ 기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해당 □ 해당없음 □

위와 같이 신중년취업자 채용을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00 시장·군수 귀하

[서식2]

신중년취업운영계획서(기업용)

사업장명		지사(지점)명	(연락처) -
------	--	---------	---------

연수기간 ~ (개월)
------	------------------------

근무시간	: ~ :
------	-------

연수관리		
관리책임자	직위	성명
근무부서 및 성명	근무부서	수습자 성명

운영계획	
직무교육 (멘토방법)	
부서배치방법	
정규직 채용계획	

위의 운영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00 시장·군수 귀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용)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1. 전북특별자치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중년취업인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류,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내 시·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내 시·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

○ ○ 시장(군수) 귀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성 명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1. 전북특별자치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중년취업인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류,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내 시·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내 시·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

_____ 귀하

신증년취업선발자 명단통보서(기업용)

사업장명		대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채용확정 인원	명
(단위사업장)소재지			

※ 채용 확정 즉시 관할 시·군에 통보해야 함

※ 통보 이후에는 신증년취업 수습자와 근무조건 등에 대해 「신증년채용
약정」을 체결하고, 지원금과 관련하여 시·군과 「신증년취업지원약정」을
체결해야 함

선발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습예정기간	연락처
1				
2				
3				

위와 같이 신증년취업수습 선발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직인

(시군) 귀하

운영 절차	수습선발자 명단 통보→신증년채용수습약정체결(수습자-기업)→신증년 취업지원협약체결 신청(기업-시군)→협약체결→근무개시→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	---

[서식 7]

표준 근로계약서

_____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__시__분부터 __시__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주__일/토,일요일
6. 임 금
 - 월급 : _____ 원

항목	금액	비고
기본급	_____ 원	
수당	_____ 원	직책수당, 기술수당, 연장·휴일수당, 식대, 교통비 등 각종수당
	_____ 원	
	_____ 원	
	_____ 원	
상여금	_____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_____
 주 소 : _____
 대 표 자 : _____ (서명)

(근로자) 주 소 : _____
 연 락 처 : _____
 성 명 : _____ (서명)

신중년취업지원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과 ○○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간에 『전북특별자치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지원금 지급)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실시기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시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실시기업”이 채용한 신중년취업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신중년취업 연수장소) ① 신중년취업의 연수 장소는 별첨한 「신중년채용약정서」에서 정하는 “실시기업”의 사업장 내로 한다.

② “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 참여자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외근 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다.

제4조(신중년취업계획서의 작성·비치) “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내용을 신중년취업 참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실시기업의 협력의무) “시군”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실시기업”에 지침에 의거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을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신중년취업 운영상황의 통보) “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 운영실적을 “시군”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실적파악을 위한 “시군”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신중년취업지원금 지급) ① “시군”은 「신중년채용약정서」에 따라 “실시기업”이 신중년취업자에게 지급한 약정임금 중 도(시군)의 신중년 취업지원금을 월단위로 “실시기업”에게 지급한다.

- ② “시군”은 “실시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중년채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정·지급한다.
- ③ “실시기업”은 급여일에 신중년취업급여를 지급한 다음, 익월 5일까지 급여대장 사본(입금예금통장 포함)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시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자에 대하여 “시군”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 「신중년채용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기업의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시군”은 “실시기업”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에 개시한 신중년취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실시기업”은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지침」 및 본 협약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 ① “시군”은 “실시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중년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군”은 “실시기업”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신중년취업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군”은 “실시기업”이 “시군”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신중년취업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시군”은 “실시기업”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 1개월 내 여타 근로자를 고용조정(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시군”은 “실시기업”이 본 약정체결 이후 또는 정규직 채용 후 지원기간에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인위적 감원을 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향후 2년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 ⑥ “실시기업”은 협약서 위반 등 부당한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즉시 부당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을 “시군”에 반환하여야 하며 “시군”은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 ⑦ “시군”은 “실시기업”이 약정한 수습기간 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신중년채용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추후 신중년취업자 채용 지원을 금지한다.
- ⑧ “실시기업”이 “시군”으로부터 반환요구나 전북특별자치도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시군”은 “실시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 ⑨ “실시기업”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을 운영하거나 “시군”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은 해당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중년취업사업의 중단 등) “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기간 종료 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 “시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정규직 채용전환) ①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단을 “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점점·평가 등 조치) ① “시군”은 “실시기업”의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년취업운영계획, 신중년채용약정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주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

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시군”은 “실시기업”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한 경우 약정을 취소한다.

제13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시행지침이나 관계법령,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군”, “실시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 .

(시·군) (시군)

(실시기업) 회사

대표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서식11]

()월 신중년취업자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대표자
------	-----

사업자 등록번호	
----------	--

소재지	연락처 (담당자) ()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 지점)
--------------	-------------	-----------

지원금 신청 대상 기간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 원)	원
취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일 (또는 해지일)	임금 지급액	지원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휴업 또는 산재요양	기간	~	급 여 (보상비)	원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근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회사 대표 직인</p> <p>00 시장·군수 귀하</p>

- | |
|---|
| <p>【구비서류】 1. 취업약정서 사본(협약 체결 후 변경이 있는 경우)</p> <p>2. 참여자 출근부 사본</p> <p>3. 임금대장 사본</p> <p>4. 계좌이체내역(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p> <p>5. 4대 보험 납부(고지) 영수증</p> |
|---|

중도탈락자에 대한 대체인력 명단통보서

사업장명		대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중도탈락 인원	명
소재지			

구분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입사일	사직일
중도 포기자					
대체인력					

○○시·군에서 시행중인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자 중 개인사유로 인하여 중도 포기자가 발생되었으나, 위와 같이 대체인력이 충원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시장,군수 귀하

